



제420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예비행위 감경처벌〉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34호)

2025. 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석준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10. 10.
3. 회 부 일 : 2024. 10.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밀수입 행위의 예비를 밀수입행위로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특가법 제6조제7항)에 대해서 위헌결정(2016헌가13 등)을 한 바 있음.

동 위헌결정은 취지는 현행 특가법이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아닌 밀수입죄의 예비행위를 한 경우에도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준비단계에 불과한 예비행위를 밀수입죄와 같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며, 밀수입 예비행위로 수입하려던 물품의 원가가 2억원 미만일 때는 「관세법」이 적용되어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반면에, 2억 이상이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밀수입죄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임. 이러한 사정은 밀수출과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됨(다만, 헌법재판소는 밀수출과 관세포탈 예비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 위헌여부 판단은 하지 않았음).

이에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의 예비행위에 불과한 경우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¹⁾는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조항으로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및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의 행위를 가액에 따라 가중하고, 제7항에서는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제269조 및 제270조의 교사·방조, 미수 및 예비죄)²⁾를 범한 사람은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관세법」 제26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물품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관세법」 제269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逋脫)·면탈(免脫)하거나 감면(減免)·환급받은 세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 「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2. 제2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3. 제3항의 경우: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4. 제4항의 경우: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 제5항의 경우: 수입한 물품의 원가
- 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 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관세법」 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제7항에서 “「관세법」 제271조”를 “「관세법」 제27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하고, 제8항을 신설하여 “「관세법」 제271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본죄(本罪)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 ⑥ (생략)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⑦ -----제271조제1항 및 제2항----- ----- -----.
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⑧ 「관세법」 제271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본죄(本罪)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신설>	⑨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2. 검토의견

가. 현행법상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등의 처벌 규정

1) 「관세법」 제269조 및 제270조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조항은 ① 같은 법 제234조 각 호³⁾에 규정된 수출입 금지물품을 수출입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제1항),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및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⁴⁾를 하지 않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제2항), ③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반송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제3항)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3)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4)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제2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5)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조항은 ① 수입신고를 한 자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제1항 제1호)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신청(제1항제2호)한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② 수입신고한 자가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제2항), ③ 수출신고를 한 자가 수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제3항),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감면·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제4항),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제5항)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6)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재심사 및 제87조제3항에 따른 재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

2)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는 관세법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전문성·지능성·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란 특성을 고려하여 물품가액, 물품의 원가 또는 부정하게 환급받은 세액 등의 금액에 따라 「관세법」에 규정된 처벌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⁷⁾

예컨대, 수출입 금지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한 경우 (1) 물품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2) 물품가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3) 두 경우 모두 같은 조 제6항제1호⁸⁾에 따라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됨. 다만, 물품가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세법」 제269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관세법」 제269조 및 제270조와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밀수출입죄와 관세포탈죄 등의 법정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은 세액을 즉시 징수한다.

7)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바88 전원재판부

8) 「특가법」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1. 제1항의 경우: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표] 밀수출입죄와 관세포탈죄 등의 법정형 비교

구성요건			법정형
밀 수 출 입 죄	금지물품 수출입 (「관세법」 §269①)	물품가액 1억원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물품가액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특가법」 §6①1., §6⑥1.)
		3천만원~1억원	3년 이상 유기징역 & 물품가액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특가법」 §6①2., §6⑥1.)
		3천만원 미만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관세법」 §269①)
	수입신고 미신고 및 다른 물품으로 신고 (「관세법」 §269②)	원가 5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상당 벌금 (「특가법」 §6②1., §6⑥2.)
		2억원~5억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상당 벌금 (「특가법」 §6②2., §6⑥2.)
		2억원 미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상당 벌금 (「관세법」 §269②)
	수출·반송신고 미신고 및 다른 물품 으로 신고 (「관세법」 §269③)	원가 5억원 이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출·반송한 물품의 원가 상당 벌금 (「특가법」 §6③, §6⑥3.)
		5억원 미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상당 벌금 (「관세법」 §269③)
관 세 포 탈 죄 등	(1)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허위신고 (「관세법」 §270①1.) (2) 부정감면 (「관세법」 §270④) (3) 부정환급 (「관세법」 §270⑤)	포탈금액 2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포탈 등을 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상당 벌금 (「특가법」 §6④1., §6⑥4.)
		5천만원~2억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포탈 등을 받은 세 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상당 벌금 (「특가법」 §6④2., §6⑥4.)
		5천만원 이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등을 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상당 벌금 (「관세법」 §270①1., §270④, §270⑤)

구성요건			법정형
	(1)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 서류로 심사 신청 (「관세법」 §270①2.) (2) 수입조건 허위 구비 (「관세법」 §270②)	원가 5억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입한 물품의 원가 상당 벌금 (「특가법」 §6⑤1., §6⑥5.)
		2억원~5억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입한 물품의 원가 상당 벌금 (「특가법」 §6⑤2., §6⑥5.)
		2억원 미만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등을 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상당 벌금 (「관세법」 §270①2.)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270②)
	수입제한 완제품을 부분품 위장수입 (「관세법」 §270①3.)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등을 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상당 벌금 (「관세법」 §270①3.)
	수출조건 허위구비 (「관세법」 §270③)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270③)

3) 「관세법」 제271조 및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제7항

「관세법」 제271조는 같은 법 제269조(밀수출입죄) 및 제270조(관세 포탈죄 등)의 교사·방조범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제1항)하고,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제2항)하며, 해당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제3항)하도록 하고 있음.⁹⁾

반면,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제7항은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 또는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9) 해당 조항에서는 밀수출입죄와 관세포탈죄 외에 제268조의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의 미수범과 예비범의 처벌도 규정하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논의에 필요한 밀수출입죄와 관세포탈죄만 서술함.

* 제271조(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고 규정함. 즉, 「관세법」 제271조제3항은 예비범에 대하여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가법」 제6조제7항에서는 예비범도 ‘감경 없이’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나. 개정안의 취지 및 검토

안 제6조제8항은 「관세법」 제271조제3항에 규정된 죄인 제269조의 밀수출입죄와 제270조의 관세포탈죄 등의 예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임.

개정안은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제7항 중 「관세법」 제271조제3항 가운데 제269조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밀수입 예비행위”)¹⁰⁾에 대하여 2019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예비행위를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형사범죄 예비죄와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9. 2. 28. 2016헌가13)한 취지를 반영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제7항 중 「관세

10)「특가법」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제271조(미수범 등)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법」 제271조제3항에서 밀수출입죄와 관세포탈죄 등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밀수입 예비행위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결정취지가 예비행위를 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것이고, 「관세법」 제271조제3항에서 제269조(밀수출입죄)와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의 예비범은 모두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제8항과 같이 위헌판결을 받은 심판대상조문인 「관세법」 제269조제2항의 밀수입행위 외에 같은 조 제1항의 금지물품 수출입행위, 같은 조 제3항의 밀수출행위 및 제270조의 관세포탈죄 등을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까지 그 대상으로 하여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법정형을 본죄의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사료됨.

다만, 안 제6조제8항은 “「관세법」 제271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본죄(本罪)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관세법」 제271조제3항은¹¹⁾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등의 예비죄를 이미 범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므로, 그 표현을 “「관세법」 제271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11) 「관세법」 제271조(미수범 등) ③ 제268조의2,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¹²⁾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6조(「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 ① ~ ⑥ (생략) ⑦ 「관세법」 제271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그 정범(正犯) 또는 본죄(本罪)에 준하여 처벌한다. ⑧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u><신설></u>	제6조(「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71조 제1항 및 제2항----- ----- ----- ----- ----- ----- ⑧ 「관세법」 제271조 제3항에 규정된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본죄(本罪)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⑨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또는 제2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개정안과 같음) ⑧ 「관세법」 제271조 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12) 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발의되어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084호)에서도 제6조제8항의 표현을 “「관세법」 제271조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예에 따른 본죄(本罪)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로 한 바 있음

참고로, 이하에서는 밀수입 예비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9. 2. 28. 2016헌가13)을 구체적으로 살펴봄.

먼저, 헌법재판소는 책임과 형벌 상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서 관세범죄는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장기적·연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범죄단체화되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특징을 가지므로 관세법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준비단계인 예비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이른 미수나 실질적인 법익의 침해 또는 위협한 상태의 초래라는 결과가 발생한 기수와 행위태양이 다르고 법익침해가능성과 위험성도 다르므로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도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봄.

또한, 현행법은 위험성이 미약한 예비행위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행위자의 책임을 넘어서는 형벌이 부과되며, 「관세법」이나 특정범죄가중법에서 관세법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벌금의 필요적 병과나 가중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다음, 헌법재판소는 형벌체계상 균형성과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죄(「관세법」 제269조제2항)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행위를 한 동일한 경우라도 (1) 물품원가가 2억원 미만이면 「관세법」 제271조제3항

에 따라 본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경한 범위’에서 처벌을 받으나 (2)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본죄(3년 이상의 징역과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에 준하여 처벌받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봄.

또한, 밀수입 예비행위 외에 불법무역 관련 범죄 중 특정범죄가중법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마약범(제11조)나 조세포탈범(제8조, 제8조의2)은 예비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¹³⁾ 「형법」 제255조에 따른 살인예비죄¹⁴⁾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데,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밀수입죄의 예비죄는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게 되므로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함.

문 의 처
02) 6788-5056

13) 「형법」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14) 「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